

임대희 엮음, 『판례로 본 송대사회』 (민속원, 2019)

홍성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국 법제사 연구도 최근 상당한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력의 방향은 주요 텍스트의 번역과 해외 연구의 번역·소개인 경우가 많았다. 중국사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제사 연구는 악명 높게 난해한 한문 텍스트와 법률 조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번역 소개 작업은 창의적 해석을 위한 일종의 ‘바닥 다지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바닥 다지기 작업이 한 세대 정도 지난 뒤에 드디어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는 집단 연구가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소개할 임대희 엮음, 『판례로 본 송대사회』(민속원, 2019)가 바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판례로 본 송대사회』는 중국어 제목이 ‘명공서관청명집의 법률세계’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원래 제목은 이러했지만, 『명공서관청명집』(이하 청명집으로 약칭)가 독자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쉽게 서명을 바꾼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남송시대(1127년~1279년) 편찬된 판례

* 부산대 역사교육과

집인 『명공서관청명집』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놓은 논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간략해 소개하도록 한다. 이 책은 모두 5부 모두 855페이지로 이루어졌는데,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부동산 거래와 계약서

- ① 박서진, 「저당 소송을 중심으로 본 송대의 業소송」
- ② 이종찬, 「송대 부동산 거래와 친린법」
- ③ 배수현, 「송대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위조」

II. 여성과 가족

- ① 우성숙,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 ② 김보영, 「송대 女戶의 입호와 국가관리」
- ③ 김경희, 「송대 고아 후견과 檢校」
- ④ 남은혜,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
- ⑤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역, 「송대 데릴사위와 接脚夫」

III. 형벌과 사법 기관

- ① 서지영, 「송대 제점형옥사의 기능변화와 그 의미」
- ② 남현정, 「송대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 ③ 정우석, 「송대 編管刑의 등장과 그 시행상의 특징」
- ④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역, 「송대 折杖法 초고」
- ⑤ 취차오리, 임대희·서지영 역, 「송대 轉運司의 사법기능」

IV. 지방관과 지방

- ① 박순곤, 「송대 지방서리의 모습」
- ② 구경수, 「남송대 지방관의 祠廟 신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 ③ 임대희, 「송대 “對移”제도의 실행」

V. 사료 소개 및 연구동향

- ① 타카하시 요시로, 임대희 역, 『명공서관청명집』
- ② 니이다 노보루, 임대희 역, 『청명집 호혼문의 연구』
- ③ 남은혜, 『송대 가족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 ④ 서지영, 『송대 제점형옥사에 대한 연구동향』
- ⑤ 장용준, 『송대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동향』

목차만 봐도 이 저작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청명집』과 씨름하여 왔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각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I-① 박서진, 『저당 소송을 중심으로 본 송대의 業소송』

본 논문은 『청명집』 『戶婚門』을 소재로 하여 남송 시대 부동산(業) 분쟁은 어떤 사례가 있었으며, 반대로 지방관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청명집』 『호혼문』의 판결을 보면, 법령을 바탕으로 하는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등의 실질적인 증빙서류(上手契나 干照 등)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고 한다. 한편, 송대의 지방관은 법률 조문이라는 단순한 규정에만 얽매어 판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정과 범의라는 측면을 상당히 고려하여 판결하려고 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남송대 부동산 거래 관습이나 유형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I-② 이종찬, 『송대 부동산 거래와 친린법』

이 논문도 역시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다. 『청명집』에 나타나는 부동산 거래의 종류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① 전(典), ② 저당(抵當), ③ 전매(典賣), ④ 절매(絶賣)가 바로 그것이다. 전(典)과 저당은 모두 담보 설정을 하지만, 전지는 점유를 하는 것이고, 후지는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매는 계약 기간 내에 소유권을 가지고 환수 가능한 제한적 매매이며, 그리고 절매는 영구매매를 의미한다. 이를 소유권과 점유권을 기준으로 간략히 표로 나타내 보았다.

소유권 이전 수반되지 않는 거래	① 전(典)	점유권 이전
	② 저당(抵當)	점유권 이전 없음
소유권 이전 수반된 거래	③ 전매(典賣)	계약기간 내 환수가능
	④ 절매(絶賣)	소유권 완전 이전 환수 불가능

나머지 거래 방식은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확실히 절매(絶賣, 혹은 活賣)라는 방식은 매우 낮은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날의 부동산 거래와 다른 점은 또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에 ‘親隣’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청명집』에 따르면 이 친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척과 인근 지역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했다고 한다. 즉 친족이면서 거래 토지와 이웃한 자가 타인보다 해당 부동산을 우선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선매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관행은 실은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요인을 없애고, 그에 따라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라고 한다.

I-③ 배수현, 「송대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위조」

본 논문에서는 계속해서 『청명집』 속에서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 수속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우 꼼꼼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남송대로 돌아가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본 논문에 따르면 송대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족 공산제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었으며, 자식이 부모의 동의 하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상에 家長의 싸인(花押)이 있거나, 또는 가장이 사망한 후에는 모친의 화압이 있어야만 그 거래는 정식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토지계약서의 위조에 관한 다양한 사례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계약서 소송에서 士인들이 우대를 받아서 실제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宋朝가 문치주의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士인들이 실제 소송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II-① 우성숙, 「송대 여성의 재혼과 재산문제」

본 논문은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 재혼에 따른 재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은 이에 관한 꼼꼼한 연구사 정리를 한 뒤에, 처의 지참 재산은 同居共財 가족체제 하에서 시집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다만 처의 지참재산으로 불린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고 남편 사후 처가 남편의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 시가 슈조(滋賀秀三)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이 수절하지 않고 재혼할 때에는 전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의 견해에 따르면, 이에 관련된 분쟁에서 재판관은 전 남편의 재산을 재혼한 처가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있으며, 이는 재혼이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지는 않았다는 柳田節子の 견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즉 재혼은 처가 자기 속에 살아 있는 남편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남편의 종을 이탈하는 행위이며 그와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滋賀秀三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송대 여성은 자신의 지참재산의 배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대의 경우 남자의 빙재의 절반 정도의 지참금을 받았는데 비해, 송대의 미혼여성은 가산분할시 아들 몫의 2분의 1을 받아 그 몫이 어느 시대보다 컸다. 이것은 당시 남송의 주요무대였던 강남지역의 관습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모가자(隨母嫁子), 즉 모친이 재혼한 경우, 그의 아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추적한 결과, 이 경우에도 그의 아들이 친부에 대한 재산 승계권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II-② 김보영, 「송대 女戶의 입호와 국가관리」

본 논문에서는 女戶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다. 여호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호주가 사망하고 호를 대표할 성년의 남성이 없는 경우(즉 戶絶家) 남겨진 여성이 그 해당 호(戶)의 호주를 담당했던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이 호절가의 호를 계승하거나 성년이 아닌 어린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을 대신해 호를 계승하는 것으로 여호의 입호는 계승된 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따르면 송대는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소농단위의 경영과 상업화·도시화로 인해 친족 간 공동생활의 필요성이 덜해지고 유대가 약해져 가산분할의 시기가 빨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송대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소가족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호 계승에 있어 제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들은 이혼시에 자기네들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 재산을 자유롭게 팔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방관은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등 당시 여성의 생활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조는 여호를 主戶로 파악하여 戶等 안에 위치시켜 국가의 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즉 이 시기는 여호에게 직역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여호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가족형태로서 구제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호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국가의 이익과 수입 원천의 일부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는 송대 사회의 가족적 특징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재산권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II-③ 김경희, 『송대 고아 후견과 檢校』

본고에 따르면 송대는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가족 내 가산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적·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법규로 제정하였다고 한다. 국가는 고아에 대한 케어를 법제화하고 고아 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 제도인 檢校가 행해졌다고 한다. 검교란 송대에 이르러 고아 재산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규정과는 달리 고아가 성년이 되어도 관리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 재산으로 관리가 자신의 재산을 불린 경우가 종종 있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한다.

II-④ 남은혜, 「남송대 여성의 지참재산 소유 실태」

본고에 따르면 딸들에게 부모의 재산이 전승되는 경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혼인을 위한 지참금이 활용되었고, 송대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지참금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분량이 증대된 특징을 보이고 더 나아가 딸이 남자 형제와 가산분할에 있어 절반을 받는다는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법령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본고에 따르면 당대까지는 빙재(聘財), 즉 남자 측에서의 결혼 재정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면, 송대는 여자 측에서의 비용 즉 지참재산의 부담이 더 커졌던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제도에 의한 개인 능력의 중시와 화폐 상업경제의 발전 속에 지참금이 사회적 출세와 경제적 수익을 줄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송대가 되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교육받은 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과거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의 가정과 인척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고, 상대와의 신분 차이를 자녀 혼인 때 고액의 혼인비용으로 보상하려고 했다고 한다.

II-⑤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역, 「송대 데릴사위와 接脚夫」

이 논문은 임대희 교수가 번역한 논문으로, 이 논문에서는 데릴사위와 접각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데릴사위란 말할 나위 없이 처갓집에 들어가 사는 남편을 말하는데, 접각부는 남편으로 사망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사는 새 남편을 말한다. 접각부는 전 남편의 가산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송대에는 데릴사위나 접각부는 처가나 전 남편 집의 후계자가 되거나 분배를 받는 일은 없었고, 그 가산을 관리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처와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당연히 가산을 승계할 일은 없었다고 한다.

III-① 서지영, 「송대 제점형옥사의 기능변화와 그 의미」

본 논문에서는 송대 지방사법체제의 정점에 있는 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북송 초기 轉運使는 절도사를 대신하여 지방 행정을 수행

獄訟(형사소송)	제점형옥사
민사 소송	전운사

하였는데, 지방의 재정과 민정 모두를 감독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폭은 매우 넓었다. 그래서 太宗 淳化

2년(991), 전운사에서 분화되어 사법을 담당하게 된 기관이 바로 제점형옥사였다. 그 뒤 순화4년(993)에 폐지되어 그 업무는 다시 轉運司로 귀속되었다가, 진종시기에 제점형옥사를 다시 부활시켜서 형벌과 소송에 관한 업무를 맡게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진종 시기에는 민사사건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도 제점형옥사가 다시 설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남송 시기에 이르면 제점형옥사의 사법관련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거꾸로 제점형옥사의 권한이 더욱 확장되어 전운사의 담당 업무 및 다양한 민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양자 기구 사이에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전운사에서, 형사 사건의 경우 일차적으로 제점형옥사에서 먼저 심사해야 했다. 한때는 무신 제점형옥관도 등장하였지만, 문신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따라서 무신 제점형옥관은 곧 폐지되게 되었다고 한다.

Ⅲ-② 남현정, 「송대 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저자에 따르면 송대의 刺字는 고대 肉刑의 하나에 해당하는 墨刑이 부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중국학자 郭東旭에 따르면 남송 후기로 갈수록 문신 형벌이 강화되는 것은 계급적·민족적 모순이 격화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Mcknight에 따르면 문신형을 가하는 목적은 죄인에게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유혹을 받은 사람의 범죄심리를 억제시키며 영구적인 낙인을 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사회에 계속 알림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사회방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신형은 죄인에게 육체적 징벌 이외에도 신체적 특징을 남겨 신랄한 백성들과 차별하기 위한 낙인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신형에 처해진 죄인의 신분

을 보면, 서리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는 어찌된 이유에서였을까. 당시 낮은 녹봉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리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백성을 수탈하는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많은 범죄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서리는 행정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형을 받은 서리인 경리(黥吏)들이 향촌에서 다시 재임용되는 사례가 『청명집』에서 다수 발견된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그와 더불어 기존의 문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완화되어갔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Ⅲ-③ 정우석, 「송대 編管刑의 등장과 그 시행상의 특징」

본 논문에서는 송대에 새로이 등장한 형벌체계인 編管刑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편관형의 처벌 대상과 형벌 적용의 특징,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인식 등을 『청명집』의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송대는 기존의 五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기존의 형벌이 가혹하다고 인식했던 차원에서 折杖法²⁾이 시행되었고, 사형과 기타 형벌들 사이의 형벌 차이를 메우기 위하여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형벌체계 중 하나가 바로 편관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송대를 통하여 왕조의 통치체제가 약화되면서 편관과 刺配 모두 그 엄형적이고 추방형적인 성격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갔으며, 결국 원대가 되면서 다시 기존의 오형체제로 복귀하였다고 한다.

Ⅲ-④ 가와무라 야스시, 임대희 역, 「송대 折杖法 초고」

본 논문에서는 송대만의 독자적인 형벌인 절장법을 다루고 있다. 당말오대

1) ‘編管’이란 ‘호적에 편입하여 감독·통제한다’는 뜻으로서 “유배된 자를 유배지의 호적에 편입시켜 감독·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의 형벌체계는 당말부터 이미 붕괴되어 송대에는 크게 변모하였다. 기존의 율령제하의 5형은 ‘태·장·도·유’로 나누어진 신체형과 자유형으로 나뉘어졌다면, 절장법은 장(杖)을 가하는 형벌 체계인데, 이로 인하여 형벌을 장형과 사형이라는 이원체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시기의 경험이 집약되어 건륭 4년에 성문화되고 휘종년간 2번에 걸쳐 개정된 송대 절장법은, 율칙으로 규정된 당률적 오형에 의한 형명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형벌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절장법이 송대 300년에 걸쳐 그 기능이 필요하게 된 것은 송대의 형사수속의 체계가 당률적 5형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Ⅲ-⑤ 취차오리, 임대회·서지영 역, 『송대 轉運司의 사법기능』

앞서 Ⅲ-① 서지영의 논문은 제점형옥사의 사법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전운사의 사법기능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대에 처음 설치된 전운사의 원래 기능은 세금 수송이었다. 제점형옥사가 설립된 초기에는 전운사, 제점형옥사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 신종 원풍년간(1078-1085)의 개혁 후, 각 주의 사형사건의 최종심판은 반드시 제점형옥사의 비준 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Ⅲ-① 서지영의 논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전운사는 특히 민사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송대 路級 監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형사사법기구는 제점형옥사였다. 형사사건 소송순서는 제점형옥사→轉運司→提舉司→安撫司 등 순서였다고 한다. 민사 사건 소송절차는 형사와 반대로 전운사가 제일 중요한 사법기구였다. 1차 소송은 전운사, 재소송은 제점형옥사였으며, 이것이 송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전운사가 지방최고의 사법기관이 된 것은 당시 송왕조가 민사소송을 중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Ⅳ-① 박순곤, 『송대 지방서리의 모습』

본 논문에서는 『청명집』에 나타난 지방서리의 뇌물수수과 같은 부정행위를 검토해 봄으로써 獄訟과 조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서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송대에는 주·현에 걸쳐 많은 종류의 서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五代부터 행정실무 각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

작하여 송대에 접어들면서 직역제도의 분급과정에서 점차 세습화되어 가는 가운데 서리제도로 굳어져 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지방서리들은 현직 사대부 관료들이 행정실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옥송의 과정과 조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많은 부정행위 즉 뇌물수수나 횡령 등을 저지르면서 국가의 재정을 어지럽히고 일반서민들을 수탈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다. 우선, 옥송에서는 재판업무를 접수부터, 감옥에 수감, 장형의 집행, 석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뇌물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역의 불공정한 분급에는 반드시 서리들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있었다고 본다. 불공정한 역의 분급상황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는 모역법으로 역의 부담을 전환시켰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남호(攬戶)였다. 남호는 조세를 대납하는 사람으로 관으로서의 조세의 일정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남납(攬納)의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이 제도를 유지시켜 나갔다. 이러한 조세징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또 한 가지 동원된 것이 궁수(弓手)·채병(寨兵)들을 이용한 조세독촉과 체납자들의 불법 체포행위였다. 원래 궁수는 도적을 체포하고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직역으로 원래 일반 서민들에 대한 조세 독촉과는 무관한 위치였지만, 지방관들의 명령으로 조세 독촉에 동원되어 일반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였다고 한다.

IV-② 구경수, 「남송대 지방관의 祠廟 신앙에 대한 인식과 대응」

본 논문에서는 『청명집』을 소재로 하여, 민간 신앙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명집』속의 판결 양상은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인정과 法意’를 적용하여 감형을 시켜 주었던 일반적 관례가 있다. 그러나 불법적 신앙에 대해서만은 매우 단호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청명집』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불법적 신앙에 대해 상당히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중심의 예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송 왕조의 입법의지가 지방관들에게도 침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남송대 유가적 합리주의 사상을 지닌 지방관들이 지방제사를 정비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제사를 음사로 규정하여 엄벌주의를 표방하고 백성을 교화하여 국가 제사 질서를 확립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관들의 음사 철폐 조치를 지역 사료들은 묘액과 봉호를 하사 받아 피해가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正祠로 위장하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거나, 지방 서리들과 결탁을 통해 피해나갔다. 지방관들도 원칙적으로는 淫祠에 대해 엄벌주의와 강경대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음사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 처벌을 하거나, 음사에 대해 법률의 적용 자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IV-③ 임대희, 「송대 “對移”제도의 실행」

본 논문에서는 『청명집』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방관 교체에 관련된 사안들을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용어들을 하나 하나 검토하여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청명집』에 등장하는 지방관의 교체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를 집행하는 주관자는 路의 장관인 監司나 知州나 知府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교체 대상자는 기층 행정구역인 知縣을 비롯하여 현승·주부·순검 등과 같은 지방 관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로 볼 때 대이는 府州급의 지방 고위관료들이 지방 기층 장관인 지현 이하의 관리들에 대한 징계방법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청명집』에서 볼 때, 對移와 관련된 사안을 신분이 다른 서리 등이 저질렀다면, 折杖으로 처벌하였을 터인데도, 관료라는 이유로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V-① 타카하시 요시로, 임대희 역, 「명공서판청명집」

본 논문은 『청명집』에 대한 사료 해제와 연구사를 개관하고 있다. 『名公書判清明集』은 남송 영종조(寧宗朝) 후반부터 이종조(理宗朝) 무렵까지 13세기 전반에 활약한 뛰어난 행정수완을 발휘해 “名公”이라 불리던 지방관. 그들의 “書判” 즉 판결문 가운데 “清明”한 것을 모았다는 것에서 책 이름이 유

래한다고 한다. 이 책에는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당시의 법제사와 법 운용의 실태, 재판과 사법행정의 실태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재판 당사자로 등장하는 여러 계층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인적 네트워크, 혹은 더 넓게 경제활동과 사회관계, 지방정치의 구조, 민중의 종교적 혹은 문화적 환경 등과 같은 측면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현상은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송이라는 시대에 이런 지방행정에 관한 안내서가 널리 절실히 요구되었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시 지방관의 주요 임무는 재판과 징세였다고 하지만, 판결집과 관감서의 간행은 그들이 임무에 적응하고 시대의 요청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청명집』은 현재 두 종류의 판본이 존재한다. ① 일본의 靜嘉堂 문고에 소장된 宋版本으로 여기에는 戶婚門 1문만 존재하였다. ② 최근에 중국에서 발견된 明版本으로 14권, 官吏門, 賦役門, 文事門, 戶婚門, 人倫門, 人品門, 懲惡門 총 7문으로 분류된다. 판본의 분량은 송판본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송대에 갑자기 이런 서적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시대적 배경 때문일까. ① 과거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른 새로운 관료군이 배출되었다. 그들이 지방관으로서 임지에 부임하여 서리를 통제하고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청명집』과 같은 가이드북이 필요했을 것이다. ② 민중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함께 화폐경제 진전에 의해 사회경제가 복잡해졌고, 사회계층이 유동화되어 다양한 모순과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송대의 지방관으로서 사건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쌍방이 더 이상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명집』과 같은 가이드북을 꼭 참고해야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명집』 편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뒤에는 『청명집』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을 요령 있게 소개하고 있다.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는 명판본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타계하였으므로 이 논문은 어디까지나 송판본을 이용한 연구라는 점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초기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논문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특히 가족공동재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가족공동재산을 “同居共財”, “同居共爨” 또는 “同財”, “同爨” 등이라 말하고 있는데, 『청명집』에는 가산이 친자간의 공동재산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설을 보강하고 있다.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아들이 비록 공동재산을 가지는 친족이더라도, 아들 한 명의 의견에 의해, 이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대에는 10세대가 함께 살며 재산을 공유한 예가 종종 사료에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재산친족 가운데 남자가 없거나, 혹은 과부가 없을 때는 소위 호절이 되어 가산은 미혼여자들이 나눠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시가 슈조(滋賀秀三)의 견해와 다르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아래 V-③ 남은혜의 논문에서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V-④ 서지영의 논문에서는 송대 제점형옥사에 대한 연구동향이 소개되어 있고, V-⑤ 장용준, 송대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동향이 소개되어 있으니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판례로 본 송대사회』를 거칠게나마 요약해 보았다. 주어진 시간과 편폭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 훌륭한 논문집이 지닌 장점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저자들과 독자들에게 널리 혜택을 구한다.

기존의 중국 가족제도 등에 관해서 주로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와 시가 슈조(滋賀秀三)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니이다 노보루는 중국의 “동거공재(同居共財)=가족공산제론”과 여성의 가산계승권³⁾을 인정하였다면, 그에 반대편에 서서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 연구자가 시가 슈조의 연

3) 여성 재산권에 대한 니이다 노보루의 견해는, 同, 박세민·임대희 옮김, 제3장 「송대 가산법에 있어서의 여자의 지위」, 『중국법제사연구(가족법)』(서경문화사, 2013) 참조.

구4)인데, 이 책의 저자들은 전반적으로 가족공산제론과 여성 가산계승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에 대한 면밀한 사료적 입증이 수반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책에 단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저자들 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편집과정에서 과감하게 생략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미묘하게 강조점이 저자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합의가 있어서 통일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각 논문에 사료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를 논문의 각주에서 처리하지 않고 맨 뒤에 따로 <용어사전>이라는 항목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청명집』 그리고 나아가 중국법제사를 전공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논문 저자들의 사진도 아울러 함께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본 논문집은 전문적인 중국사 연구자부터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까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전문적인 중국사 연구자의 논문이 훌륭한 퀄리티를 지니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역시 기존의 연구사 정리부터 사료 해석,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치밀하게 논증하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놀라게 되었다. 評者 역시 평소 지방에서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퀄리티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아울러서 이를 지도해서 훌륭한 연구자로 육성해 낸 임대희 교수의 지도방법에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펴 본 논문집 앞의 사진들은 이들 저자들과 『청명집』 사이의 씨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훌륭한 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 논문집은 저자의 한 사람이자 주편자인 임대희 교수가 정년을 맞이하

4) 시가 슈조, 박세민·임대희 외역, 제4장 「부녀의 지위」, 『중국 가족법의 원리』(학고방, 2020) 참조.

면서 출간한 것이다. 임대희 교수는 본인의 전공인 수당대 법제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중국 법제사 연구, 그리고 나아가 중국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 연구들을 소개하고 번역해오는 작업을 해 왔다. 어학 장벽이 높기로 악명 높은 중국사에 이러한 임대희 교수의 작업들이 후학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 논문집은 그러한 업적을 쌓은 임대희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임대희 교수는 『머리말』에서 정년 이후에도 수당시대를 주제로 쓴 석사논문 지도생들의 논문들을 언급하면서, 이들 논문을 모아서 『수당시대의 정치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책을 출간하고자 한다는 희망을 밝히고 있다. 부디 이러한 임대희 교수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정년 이후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계속 연구 업적을 내시길 기원하면서 삼가 졸평(拙評)을 마치고자 한다.